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11.23 (금)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7. 11. 26(월)
- 다. 상정일자 : 2007. 12. 04(화)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조례특위 상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2조)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2) 예산지원의 범위(안 제5조)

-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호국 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복지지원의 범위(안 제6조)

- 체육시설, 기념관 등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의 감면

-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에서의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 공식적인 보훈행사 참가시 차량지원
- 생존애국지사, 1~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향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점검과 사망시 장례지원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조례안은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고도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법에 의거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산지원 및 복지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일반 의전행사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감면 등 복지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내용에 대하여 보훈관련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하여 중복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적 개념으로 볼 때에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다. 결과적으로,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희생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또한 후손들에게는 애국애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 조문구성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하기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2조)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나. 예산지원의 범위(안 제5조)

-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호국 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복지지원의 범위(안 제6조)

- 체육시설,기념관 등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의 감면
-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에서의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 생존애국지사, 1~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점검과 사망시 장례지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제출의견 있음
- 기 간 : 2007. 7. 27 ~ 8. 17
  - 결 과 : 제출의견 반영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대한상이군경회 평창군지회	조례안 제6조 복지지원 대상 중 14호 ....., 1~3급에 해당하는 증상이 국가유공자는 관내에 2명 밖에 없으므로, 1~4급에 해당하는 증상이 국가유공자로 확대 해 줄 것	1~4급으로 확대 반영

라. 기타사항 : 강릉·동해시, 영월·철원·인제군 등 5개 시군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자치단체는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심의중임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 대상)**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평창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2.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평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군에서 설치한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의 건립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기념관 등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의 감면
2. 군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3. 생존 애국지사, 1~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시 장례지원

**제7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1. 국가보훈기본법('05. 5.31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①(생략)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공훈선양 시설의 건립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 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05.3.31 개정)

**제16조의2 (생업지원)**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생략)

[본조신설 2005.3.31]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7.29 개정)

**제42조(진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1.1.16, 2005.7.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5.7.29>

④(생략)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05.3.31 개정)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